

대 관 규 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위니아트에서 운영하는 모든 문화공간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내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역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공연장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올바른 공연 문화 정착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세미나 및 기타행사 포함)이나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대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를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공연장의 대관승인을 받아 공연장 운영자와 (이하 '운영자'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3. 대관의 범위는 공연장 내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운영자는 대관시설, 설비의 유지관리,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제3조 대관의 종류

대관종류는 대관신청의 시기,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대관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 가. 정기대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장기 대관을 말합니다. 매년 운영자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계약, 확정합니다.
 - 나. 수시대관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 일정에 부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대관을 말합니다. (수시접수)

2. 대관 목적에 따른 구분

- 가. 공연대관 : 공연장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 나. 리허설대관 : 공연 전 또는 공연 중에 공연리허설을 위한 대관
- 다.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설치를 위한 대관
- 라. 철수대관 : 공연 후 사용하기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제4조 대관의 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설비는 공연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제5조 대관료

1.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 대관 계약금 및 잔금납부 : 대관자는 대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총 대관료의 50%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공연 5일 전 잔금 (부대시설사용료 포함)을 당사가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3.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당사가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며 해당공연 5일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대관은 1일 1회 공연 (3시간 기준)에 해당하며 추가공연 시에는 추가대관료가 부과됩니다.
5. 공연장과 공동기획 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방식은 별도의 협의에 따릅니다.
6. 연간대관계약 (3개월 이상)의 경우 대관계약금은 기본대관료의 50%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자의 사유로 인한 대관 취소 시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공연일 기준 90일 이내 대관 취소 시 총대관료의 잔금이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단, 90일 이상 남은 경우 대관 취소 시 계약금은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8. 공연과 관련되지 않은 연습대관이나 기타행사의 경우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

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행사는 녹음 및 녹화, 방송, 영화, CF, 음반제작 등 공연목적이 아닌 모든 행사를 포함합니다.

9. 구두계약 (예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관계약서 작성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대관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합니다. 대관계약이라 함은 서류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납부한 대관을 말합니다.
10. 대관료의 반환과 미반환
 - ① 천재지변, 사회적 정서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발생 (세월호, 각종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반환한다. 단, 2년 이상의 장기대관 (2년 이상 특정일 대관 일정 대관)등은 제외합니다.
 - ② 단, ①의 경우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일정 이월은 양측 협의 후 가능합니다.
 - ③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11. 당사는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대관료가 30,000,000원 이상의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대관신청

제4조의 시설, 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와 공연계획서,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로 같음합니다.

제7조 대관 신청제한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 공연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3. 특정 종교 (사이비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진영의 이익을 위해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4. 기타 공연의 내용, 수준이 당사가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5. 본 규약을 위반하려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6. 공연장의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행사진행을 하거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 대관 승인

1. 대관신청 마감 후 운영자는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2.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 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공연장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공연장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9조 대관자의 의무

1. 대관자는 위니아트가 운영하는 문화공간의 시설유지 및 안전을 위해 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운영자는 '대관계약'을 취소 및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대관자는 대관 종료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시설을 완전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사용시설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운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관자는 운영자가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운영자는 대관자가 임의로 보관한 물품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날에 운영자는 다음공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장의 임시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10조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대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시 무조건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2. 운영자는 대관자가 반입하는 물건 중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반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자는 시설 사용에 있어 운영자의 안내를 요구하여야 하며 임의로 시설을 조작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물품의 보관

1. 공연 기간 중에 극장에 세팅된 장비 중 도난의 우려가 있는 장비는 대관자가 반드시 소지 및 보관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장비에 관하여도 대관자가 도난의 우려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2. 대관 기간 중 발생한 도난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공연장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대관단체는 공연장을 대관하여 사용할 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화기 및 화기에 준하는 물건이나 화재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사용 금지 (예: LPG, 부탄가스, 분수불꽃, 라인 로켓, 지름 5cm이하의 종이와 비닐류 등을 포함하여 '운영자'가 판단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일체 사용금지)
2. 대관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비 및 설치물은 기본적으로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 하며,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공연장 운영자와 사전협의 하에 조정 가능합니다.
 - 방염성능 시험성적서 (소방서 발급)
 - 방염성능 검사확인서 (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검사결과서
3. 공연장 및 부속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원형에 변형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세트 및 장소 사용을 금합니다.
4. 음향 및 조명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음향 및 조명기기의 사용에 있어 '운영자'측 소유의 기기를 무료로 사용할 시 소모품에 해당하는 부품을 비롯한 물건은 대관자가 조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제13조 공연장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 (부대설비포함)에 원칙적으로 변경을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외부 설비를 반입할 경우에는 운영자와 사전에 기술검토의 과정을 거쳐 운영자의 동의를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 경우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후 운영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대관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운영자는 임의로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대관자가 사용한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 포함)에 변형 및 이상이 발생하여 원상회복이 안 될 시 대관자는 운영자측에서 요구하는 '원상회복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4. 무대설비의 그 어떠한 변형이나 손괴도 불허합니다. (예: 무대바닥·무대벽면·객석벽면 등에 못, 피스, 양면테이프 등 사용 금지)

제14조 공연시간

1. 공연장의 공연시간은 저녁공연의 경우 하절기 19:30 (휴일 17:00), 동절기 19:00 (휴일 17:00) 오후공연의 경우 15:00 (휴일 14:00) 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1일 2회 이상의 공연을 할 경우나 낮공연만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연장의 동의를 얻어 대관자가 원하는 시간 (심야 포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1일 2회 이상의 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 및 리허설시간은 반드시 공연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제15조 공연진행 준수사항

1. 대관자는 공연 2주 전까지 무대기술 스태프회의를 거쳐야 하며, 공연장이 요구하는 진행일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대관자측 무대기술 스태프, 출연자 등은 공연장이 제공하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공연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공연용 장비 반입은 공연장 운영관리팀과 사전 협의하여 시간과 절차를 정하여 반입하여야 합니다.
4. 공연 종료 후 철수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도의 예치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5. 공연진행
 - ① 청소, 냉난방 등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 및 안전관리

에 관한 통제의 권한은 공연장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공연장의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연장 내 화환반입 및 사진, 비디오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③ 대관자는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공연개시 전일까지 공연장에서 요구하는 수량의 포스터와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연진행용 프로그램 10부, 포스터 5장)
- ④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공연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광고, 홍보물 제작 및 판매 협의

-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의 CI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2. 포스터 게시, 물품 진열, 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연장의 판단으로 불허할 수 있습니다.
- 3. 각종 홍보물이나 집기류 등의 위치와 수량은 공연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17조 방송 및 판촉 등

본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방송녹음, 또는 녹화의 경우 공연장의 승인을 얻고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공연장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인터뷰 및 행사 녹화 시 당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공연 중이나 공연 전, 후 판촉, 사인회 및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는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제19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 1.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연장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관자는 추가대관료 전액을 (1일 기준) 지불해야 합니다.
- 2. 공연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대관 계약 후 또는 공연기간 중에는 대관일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4. 대관 계약 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 대관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공연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관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제20조 공연내용의 임의변경금지

- 1. 대관자는 대관 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습니다. 임의 변경 시 공연을 불허합니다.
- 2. 단,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연장은 이 변경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대관해지 및 승인취소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대관 승인 후 제6조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 2. 계약을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았을 때
- 3. 대관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참가인원 및 행사차량이 적정규모를 초과하여 공연장 훼손 및 주차관리에 상 당한 우려가 있을 때
5. 공연장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때 (수용인원 초과, 유아 참가, 음식물 취식 등)
6. 대관자가 본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7. 공연장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했을 때

제22조 입장권의 발행

1. 입장권의 발행은 공연장과 계약 체결 후 공연장의 허가를 득하고 판매 대행 업체에 위탁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공연장과의 계약서는 위탁판매 업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합니다.
 - ①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② 공연시작 10분전에 입장을 완료합니다.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연장 내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은 공연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⑤ 휴대하신 호출기나 휴대용 전화기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⑥ 상기 내용을 위반하신 분은 퇴장조치 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공연장에서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에서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공연장은 공연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1층 B열 34번 ~ 44번 (11석, 유보석)
 - ② 1층 A열 33번 ~ 34번 (2석, 기자석)
 - ③ 1층 C열 25번 ~ 26번 (2석, 기자석)
5. 교환권 및 초대권 발행 시에는 당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당사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입장권의 판매대행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입장권을 공연장에 위탁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장은 대관자와 협의하여 공연장 회원에 한해 입장권 판매 시 회원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필요하면 당사는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대관자는 공연장 업무용 동산 및 부동산 (열쇠, 집기, 비품 등) 파손 및 분실 시 공연장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5. 대관자는 공연장이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공연장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공연장의 법률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합니다.
6. 대관자는 공연이 끝나면 공연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공연 전 상태로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7.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25조 주차 차량 사전 통보

1. 공연과 관련된 차량의 교내 주차가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사전에 예상 주차 차량수를 파악하여 공연장 측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트럭, 특수차량 주차의 경우 반드시 공연장 측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2.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또는 소형 버스 (15인승 이상)의 경우 사전에 공연장 측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교내의 주차가 불가합니다.

제26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위니아트와 '대관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제27조 규약의 변경 승인

1. 상기의 규약을 비롯하여 대관신청서 상의 내용 중에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 될 경우 운영자는 규약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2. 규약을 변경할 경우 '운영자'는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며, 통지서 발송 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운영자 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28조 규약 위반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위 약관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관자 (인)